

#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종복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심의  
생략 기준을 마련하며, 위원회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 
제도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첫째, 본 의원이 2024. 9. 30. 개정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 
맞추어 「서울특별시 경관 조례」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 
의 경관심의 대상을 ‘3층·12미터·건폐율 30% 초과’에서 ‘4층·16미터·  
건폐율 40% 초과’로 조정해, 두 조례 간 정합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  
하려는 것입니다.

○ 둘째,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계획 변경은 재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 
기존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·연·입면면적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 
10% 이내인 규모 변경이거나 「영」 제22조제2호에 따른 관련 위원회  
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

○ 셋째, 2023. 10. 4.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로 경관심의를 포함한 관련 심의가 ‘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’로 일원화되었으나, 「서울특별시 경관 조례」 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에는 아직 해당 위원회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,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·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